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전면실시

농약·중금속 등 기준 초과시엔 용도 전환·폐기

농림수산부에서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업무처리 요령을 농림수산부고시 제 1996-52호(96. 8. 1)로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다.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업무처리 요령

농림수산부 고시 제 96-52호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2. "부적합 농수산물"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별, 유해물질별 허용기준 및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설정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않은 농수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라

함은 생산·저장·출하 또는 유통과정에 있는 농수산물에 잔류된 농약·중금속·항생물질·폐류독소 등을 이화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농수산물이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수산물 안전성분석"이라 함은 안전성검사원이 생산장소·창고·저장소·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채취한 농수산물 시료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성검사 시료의 채취, 관련장부·서류의 열람,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농어가에 대한 안전성 계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농수산물 안전성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해물질의 분석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추고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농림수산부에는 중앙협의회를, 시·도에는 시·도협의회를, 시·군에는 시·군협의회 설치하여 다음 각호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협의한다.
  - 가.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대책
  - 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조사·계도·홍보 등 기본 계획
  - 다. 2개이상 시·도와 관련된 안전성검사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 및 시·군협의회는 관할지역안의 다음 각목의 사항을 협의한다.
  - 가.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추진계획
  - 나.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대상지역, 농어가선정 및 관할지역안에서 안전성 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선정
  - 다.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조사·계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라. 부적합농수산물의 처리대책
  - 마. 2개이상 시·군에 관련된 안전성검사에 관한 사항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 바. 기타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등)

- ① 중앙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도 및 시·군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기관의 공무원,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부 차관이, 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시·군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된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민간위원장장을 둘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안전성검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 검사의 기본방향

2. 안전성검사 대상품목, 대상유해물질, 대상지역 선정, 검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안전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성검사 대상품목)

안전성검사 대상품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특산물 등 관할 지역내에서 안전성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지역추진 협의회에서 추가할 수 있다.

#### 제7조(검사기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업무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국립수산물검사소·국립수산진흥원이 소관별로 분담 실시한다.

#### 제8조(안전성검사원)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수산물, 농약, 토양 및 수질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원으로 임명하여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안전성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농어가에 대한 안전성계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안전성검사원은 관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시료채취 등의 안전성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성검사기준)

안전성검사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별, 유해물질별 허용기준에 따르되,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성검사 방법)

① 안전성검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기본계획에 따르되,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병충해다발지역, 토양·수질오염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산환경, 병

해충발생여부, 농약 또는 항생물질 사용실태 등을 사전에 조사한 후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② 안전성검사는 대상품목의 생산·유통특성에 따라 생산과정, 저장과정, 유통과정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생산과정검사는 수확·어획 또는 채취직후에 출하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그 생산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2. 저장과정검사는 수확·어획 또는 채취후 주로 저장과정을 거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창고, 저장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3. 유통과정검사는 농수산물의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등 유통초기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 제11조(안전성검사 등의 입회)

안전성검사원은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및 관련 장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 판매상 등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입회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킬 수 있다.

#### 제12조(시료의 채취)

① 안전성검사원은 농수산물의 특성, 포장 및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적정량의 시료를 적합한 용구 등을 사용하여 채취하고, 이를 검사원, 소유자 또는 입회인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봉함하여 분석의뢰용 시료로 사용한다.

② 안전성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할 때는 시료의 보관·수송·운반에 편리하고 운반중에 건조, 흡습, 오염, 변질 등이 최소화되도록 시료의 종류, 형상 및 분석목적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시료의 분석기관)

농산물에 대한 분석기관은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수산물에 대한 분석기관은 수산청장이 고시한다.

#### 제14조(시료의 분석의뢰)

안전성검사시료를 채취한 기관의 장은 채취한 시료의 분석을 분석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의 시료분석

의뢰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 제15조(안전성검사신청)

① 생산자, 생산자단체,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하 "신청인"라 한다)은 분석기관에 안전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석업무량의 과다, 분석장비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성검사비용)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비용과 분석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관 및 분석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별표 1의 분석위탁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시료의 분석)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검사 시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접수 및 분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의 장은 접수한 시료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에 명시된 유해물질의 잔류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분석대상유해물질 종류, 분석방법 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시료의 분석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식품공전의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④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안전성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분석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장비가 부족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활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분석기간내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석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분석처리 기한을

정하여 검사의뢰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분석결과통보)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을 완료한 즉시 분석을 의뢰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분석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보관은 농수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료봉투 또는 용기에 관련번호를 부여하고,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상온보관이 어려운 시료는 냉동 또는 냉장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보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료접수 및 분석대장에 기재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20조(부적합농수산물의 처리)

① 검사기관의 장은 분석결과 당해농수산물이 이요령 제9조의 안전성검사기준을 초과하여 출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 요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방행정기관은 협의결과에 따라 당해농수산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 제21조(농어가에 대한 사전계도 등)

①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군 농어촌지도소, 검사기관 등과 협조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어가에 대한 안전성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부적합농수산물을 생산한 적이 있는 농어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농수산물이 생산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계도하고,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농수산물이 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빈도가 높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시·군 농어촌지도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농약안전사용지도 강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안전성검사결과보고)

국립농산물검사소장, 국립수산물검사소장 및 국립수산진

홍원장은 매달의 안전성 검사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안전성검사결과평가)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성 검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안전성관리가 우수한 농어가·생산자조직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4조(세부실시요령)

국립농산물검사소장, 국립수산물검사소장 및 국립수산물진홍원장은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실시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안전성분석 위탁수수료

| 분석항목명                   | 분석기준   | 수수료(원)  | 비고   |
|-------------------------|--------|---------|--|
| 가. 농약 잔류량               | 1점 1약제 | 60,500  | 농진청 고시<br>시험위탁수수료 적용                           |
| 나. 중금속 함량               | 1점 1성분 | 5,000   | "  |
| 다. 이플라톡신 함량             | 1점     | 63,500  | "  |
| 라. 질산염 함량               | 1점     | 21,200  | 분석소비비용 적용                                      |
| 마. 황색물질 잔류량             | 1점 1약제 |         | 농진청 고시<br>시험위탁수수료 적용                           |
| - 동물약품 일반분석             |        | 43,100  |  |
| - 동물약품 미색법분석            |        | 63,400  |  |
| - 동물약품 특수법분석            |        | 443,900 |  |
| 바. 호르몬제 잔류량             | 1점 1약제 | 500     |  |
| 사. 방사능                  | 1점     | 220     | 수산청고시<br>시험수수료 적용                              |
| 아. 세균                   |        |         |  |
| - 대장균, 생균수              |        | 2,200   | "  |
| - 분변계 대장균               |        | 3,000   | "  |
| - 장염비브리오                |        | 9,000   | "  |
| - 살모넬라균                 |        | 20,000  | "  |
| - 황색포도상구균               |        | 5,000   | "  |
| 자. 기타성분                 | 1점 1성분 |         | 유시항목의<br>분석 수수료<br>또는 성분<br>분석에 소요되는<br>비용에 의함 |
| (“가” ~ “아” 항<br>이외의 성분) |        |         |  |

〈서식 제1호 - 제7호 생략〉